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004
------	------

2024. 9. 11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8월 12일, 김경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】

-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9.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경 의원)

1. 제안이유

- 2024년 5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됨에 따라 ‘서울특별시립미술관’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에 임산부 본인 추가(안 제9조제1항 제18호 신설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가 시립 문화·체육시설 이용할 때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(2024.5.20.)에 맞추어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개정의 필요성

- 2021년 통계 기준 OECD 회원국(38개국) 평균 합계출산율은 1.58명이었으며, 우리나라는 0.81명(2021년)으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나타내면서 2013년부터 11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.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0.55명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·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.
- 서울시는 올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‘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’로 총 1조 7,77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, 임산부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·의료·경제·양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.

○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해 국립공연장,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, 서울시의 출자·출연 기관인 세종문화회관도 임신부가 일부 공연을 관람할 때 관람료의 20%를 할인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.

○ 한편, 「2023년 임신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」에 따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중 가정에서 겪은 일 중 가장 불만족 혹은 부정적인 경험으로,

‘임신으로 인한 신체적·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·지지 부족’이라는 응답이 34.5%를 차지한 바, 각종 재정적인 지원책과는 별개로 임신부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임신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4월 「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발의하여 현재 제정·시행되고 있음.

○ 따라서 동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임신·출산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관람료 면제(안 제9조제1항제18호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1)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,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·예술 향유기회 증진을 위하여 미술관을 건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,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정해놓고 있음.

○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2)에 따라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바,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(법제처 2016. 9. 22. 의견제시 16-0260). 이에 미술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일부에 대해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미술관의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.

따라서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려는 등 개정안에는 법제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 「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」에서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‘배가 나오지 않아

1) 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2)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임산부인지 티가 나지 않아서'(50.8%)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함.

특히 동 개정안의 임산부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신체적 외형만으로는 정책 수혜 대상자인 임산부를 판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
- 이에 서울시는 임산부를 증빙할 수 있는 앱카드를 개발하여 '서울지갑' 앱을 통해 보급하려는 바, 관람료 면제 자격확인 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임산부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< '서울지갑' 앱에 임산부 모바일 앱카드 예시 >

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6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규남, 김원태,
남창진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철성, 아이수루,
, 유정희, 이원형, 이종환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'서울특별시립미술관'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에 임산부에 본인 추가(안 제9조제1항제 18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무료 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</p> <p>1. ~ 1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무료 관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. 「<u>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<u>임산부 본인</u></p> <p>19. (현행 제18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9조(무료관람)제1항제18호	×	입산부에 대한 시립미술관 관람료 잔액감면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(무료관람)제1항제18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 - 현행 동 조례 제8조(관람료)제1항제2호1)에 따라 특별전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어 본 개정안 제9조(무료관람)제1항제18호를 변경·신설 시 관람료 수입 순감소가 예상됨
 -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개최한 특별전²⁾ 통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문의결과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, 단순 추정 시 실제 무료관람객 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추계가 곤란함

구분	종 류	관람료	관련 조례	비고
1	상설전	무료	현행 제8조(관람료)제1항제1호	
2	소장작품 기획전	무료		
3	기획전	현행 무료(심의결과)	현행 제8조(관람료)제1항제2호	
4	특별전	일정금액 관람료		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제8조(관람료)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2.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2) 2023. 4. 20. ~ 2023. 8. 20. 《에드워드 호퍼:길 위에서》 성인 관람료 17,000원(얼리버드 성인 2인 20,000원) 등